

전북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3027호 2025. 11. 28.(금)

www.jeonbuk.go.kr.

고 시

- 고시 제2025-36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군산시) 1
- 고시 제2025-368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순창군) 2
- 고시 제2025-369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장수군) 3
- 고시 제2025-37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5-5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공 고

- 공고 제2025-1786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30
- 공고 제2025-180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1
- 공고 제2025-1810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32
- 공고 제2025-183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 공고 33
- 공고 제2025-183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 공고 34
- 공고 제2025-1841호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35

지시사항

- 2025. 11. 21.(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37

시 군

-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1
- 정읍시 고시 제2025-15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7
- 김제시 공고 제2025-1156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주민 공람 공고 58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92)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완주군 공고 제2025-2156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60

○ 완주군 공고 제2025-2157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61

기 타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62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63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6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군산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 치	비 고
2024	군산시	옥구상평지구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172-1번지 일원	

④ 변 경 내 역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 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군산시	옥구상평지구	1,107	520,026	1,106	519,113	△1	△913	

⑤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에 따른 필지, 면적변경 및 사업지구 제외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군산시청(063-454-3972)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68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순창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순창군청)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4	순창군	내동지구	순창군 금과면 내동리 505-1번지 일원	
		대가지구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899-1번지 일원	
		두승지구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562-5번지 일원	

④ 변 경 내 역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순창군	내동지구	484	203,685	483	187,453	△1	△16,232	
	대가지구	399	166,849.1	401	163,374.1	+2	△3,475	
	두승지구	384	124,811	382	120,573	△2	△4,238	

- ⑤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 등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동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순창군청(063-650-1425)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69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장수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장수군청)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 치	비고
2025	장수군	장계지구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9-2번지 일원	
2025	장수군	장계4지구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0-9번지 일원	
2025	장수군	장계5지구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18-7번지 일원	
2025	장수군	장계6지구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7-3번지 일원	

④ 변 경 내 역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장수군	장계지구	414	143,129	418	132,368	+4	△10,761	
장수군	장계4지구	622	219,940.8	627	209,099	+5	△10,841.8	
장수군	장계5지구	322	85,054.2	324	80,657	+2	△4,397.2	
장수군	장계6지구	202	92,717	202	83,749	-	△8,968	

- ⑤ 변경사유 : 지구계 정비로 인한 편입필지 정비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장수군청(063-350-2294)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7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김제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11월 28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 업 진 흥 지 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북특별자치도	135,434.5	117,285.1	18,149.4	- 진 흥 : △1.0	- 보 호 :
김제시	21,601.5	20,075.7	1,525.8	- 진 흥 : △1.0	- 보 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3717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9,800m²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김제시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5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과 사무 이관 및 사무분장 변경,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에 따라 용어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 이관 등)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감염병관리과→농식품산업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감염병관리과→보건의료과), 사무분장 변경(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유산관리과, 여성가족과)
- 나. (용어 변경) 직군 변경 등(기술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다. 협의 : 인권담당관, 예산과, 감사위원회사무국, 자치제도과,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5. 11. 28. ~ 2025. 12. 1.(3일간)
 - 1) 단축사유 : 상위법 개정 반영 및 과 사무 이관 등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 1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6호 중 “세계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세계유산”을 “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세계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6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제65호부터 제7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4호 및 제7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6호부터 제100호까지를 각각 제72호부터 제9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1호 및 제10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3호부터 제108호까지를 각각 제98호부터 제10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1호부터 제119호까지를 각각 제105호부터 제1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4호부터 제1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한국학미래진흥원 건립 및 운영

104.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114.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성화 계획수립

115. 장수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116. 조선왕조실록 선양 사업

117. 역사문화권 중요유적발굴조사

제9조의2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홍보

제9조의2제3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하계올림픽 유치 국제 홍보

제10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여성일자리센터[(재)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제43호, 제58호, 제69호, 제81호, 제86호, 제90호 및 제9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제35호 및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7호부터 제89호까지를 각각 제88호부터 제9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4호 및 제85호를 각각 제86호 및 제87호로 하고, 같은 항 제82호 및 제83호를 각각 제83호 및 제8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부터 제80호까지를 각각 제72호부터 제8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를 제7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제61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제46호부터 제5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9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1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제92호부터 제9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7호, 제38호, 제45호, 제60호, 제70호, 제85호 및 제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6호(중전의 제35호) 중 “육성관리”를 “역량강화 사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중전의 제57호)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가정위탁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중전의 제68호) 중 “아동복지 관련”을 “아동복지협회 등 아동복지 관련 단체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80호(중전의 제78호) 중 “지원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4호(중전의 제83호) 중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며, 같은 항 제95호(중전의 제94호) 중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2호 및 제103호를 각각 제34호 및 제10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37.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45.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60. 공적입양체계 구축 및 입양아동·가족 지원

70.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지원

85.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

91.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103.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제10조제5항에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6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1호부터 제96호까지를 각각 제69호부터 제94호까지로 한다.

10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

제18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지방해양수산연구원”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지방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직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별표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직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별표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직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별표 3] <개정 2022. 12. 30., 2023. 4. 18., 2023. 6. 23., 2023. 8. 11., 2023. 12. 8., 2024.1.12., 2024. 6. 28., 2024. 8. 16., 2024. 12. 27., 2025. 6. 2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제65조 관련)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의	제
직	종	별	직	급	렬	별																
총							계	5,534	1,512	124	3,502	333	63									
정							무	직	계	4	1				3							
		정무직					소	계	4	1					3							
		도					지사	1	1													
		자치경					찰위원회	위원장	1													1
		감사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					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							정	직	계	14	6	8										
		1급					상	당	소	계	1	1										
		관리관·별					정(경제부지사)	1	1													
		4급					상	당	소	계	7	1	6									
		비서실장						1	1													
		행정·별					정	3			3											
		행정·과학기술·별					정	3			3											
		5급					상	당	소	계	2	2										
		비서관						1	1													
		국제관계					대사	1	1													
		6급					상	당	소	계	3	1	2									
		비서						3	1	2												
		7급					상	당	소	계	1	1										
		비서						1	1													
일							반	직	계	1,831	1,265	116	91	299	60							
		2-3급					소	계	3	2	1											
		2-3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소	계	12	11			1									
		3					부이사관	12	11				1									
		3-4급					소	계	2	1												1
		3-4					행정·과학기술	2	1													1
		4급					소	계	84	62	6	5	10	1								
		4					행정	36	20	6	4	5	1									
		4					행정·과학기술	44	42				2									
		4					과학기술·농업연구	1				1										
		4					과학기술·수의연구	1										1				
		4					과학기술·녹지연구	1											1			
		4					과학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5급	소계	335		267		16		11		30		11			
	5	행정	150		110		12		9		10		9			
	5	공업	1		1											
	5	농업	4		3						1					
	5	녹지	3		2						1					
	5	해양수산	5		5											
	5	시설	20		17						2		1			
	5	운전	1		1											
	5	행정·사회복지	13		13											
	5	행정·속기	1				1									
	5	행정·공업	14		13						1					
	5	행정·농업	16		14						2					
	5	행정·사서·시설	1		1											
	5	행정·녹지	2		2											
	5	행정·해양수산	1		1											
	5	행정·보건	1		1											
	5	행정·환경	4		4											
	5	행정·시설	28		26		1						1			
	5	행정·방재안전	1		1											
	5	행정·방송통신	3		3											
	5	행정·학예연구	1		1											
	5	행정·교육행정	1				1									
	5	공업·환경	1		1											
	5	공업·시설	2		1						1					
	5	농업·수의	5		5											
	5	녹지·녹지연구	1								1					
	5	수의·수의연구	6		2						4					
	5	해양수산·시설	1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5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5	보건·간호	6		6											
	5	행정·보건·약무	1		1											
	5	환경·시설	3		3											
	5	행정·공업·환경	3		3											
	5	행정·공업·시설	3		2				1							
	5	행정·농업·수의														
	5	행정·농업·시설	2		2											
	5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5	행정·시설·방송통신·공업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의	제
직	직	직																			
종	급	렬																			
별	별	별																			
	5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보건·공업	1		1																
	5	행정·환경·농지	2		2																
	5	행정·공업·농지																			
	5	행정·농업·사회복지																			
	5	행정·환경·사회복지																			
	5	행정·농업·환경·사회복지	1					1													
	5	행정·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1											1							
	5	농업·환경·수의	1		1																
	5	농업·수의·수의연구	2		2																
	5	수의·수의연구·농업연구	2															2			
	5	농업·농업연구·수의·수의연구	1															1			
	5	행정·수의·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환경·시설	4		4																
	5	행정·시설·환경·농지	1		1																
	5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5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5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5	보건·식품위생·의무·간호	1		1																
	5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632		474			44					12			73			29		
	6	행정	249		189			30					7			10			13		
	6	세무	7		6														1		
	6	전산	15		13								1						1		
	6	사회복지	8		7											1					
	6	사서	2		1			1													
	6	숙기	2					2													
	6	공업	22		18			1					1			1			1		
	6	농업	25		21													3	1		
	6	농지	13		9													4			
	6	수의	11		3													8			
	6	해양수산	24		16													8			
	6	보건	4		4																
	6	환경	10		10																
	6	시설	72		59			1								7			5		
	6	방송통신	6		6																
	6	운전	11		5			2								4					
	6	행정·세무	5		4														1		
	6	행정·전산	10		9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6	행정·사회복지	8		6											2
	6	행정·사서	1		1											
	6	행정·공업	6		4		1					1				
	6	행정·농업	8		6		1					1				
	6	행정·녹지	2		2											
	6	행정·보건	1		1											
	6	행정·환경	7		7											
	6	행정·시설	18		16		1									1
	6	행정·방재안전	1		1											
	6	행정·방송통신	2		2											
	6	행정·학예연구	1									1				
	6	행정·교육행정	1				1									
	6	전산·방송통신	3		2											1
	6	전산·시설	1		1											
	6	사회복지·보건	1		1											
	6	사회복지·간호	1		1											
	6	공업·환경	1		1											
	6	공업·운전	1									1				
	6	농업·시설	1									1				
	6	농업·수의	8		8											
	6	농업·농업연구	2							1		1				
	6	농업·수의·농업연구	1									1				
	6	녹지·시설	1		1											
	6	녹지·녹지연구	2									2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6	수의·농업연구	1									1				
	6	수의·수의연구	15		2							13				
	6	보건·식품위생	8		8											
	6	보건·의료기술	2		2											
	6	보건·간호	4		3					1						
	6	보건·약무	1		1											
	6	보건·환경	2		2											
	6	보건·공업	1		1											
	6	환경·시설	1		1											
	6	시설·방재안전	1		1											
	6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6	행정·농업·수의	1		1											
	6	행정·공업·시설	3		3											
	6	행정·공업·녹지	1		1											
	6	행정·시설·녹지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6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6	사회복지·보건·환경	1													1
	6	행정·보건·간호·약무	1		1											
	6	통신운영	1		1											
	6	기계운영	2							1		1				
	6	사무운영	5		4		1									
	7급	소계	578		364		37		35		127					15
	7	행정	198		147		25		10		7					9
	7	세무	7		7											
	7	전산	12		8				2		1					1
	7	사회복지	9		9											
	7	사서	1		1											
	7	속기	4				4									
	7	공업	27		12				5		9					1
	7	농업	15		10				1		4					
	7	녹지	12		7						5					
	7	수의	44								44					
	7	해양수산	15		8						7					
	7	보건	2		2											
	7	환경	14		11				3							
	7	시설	57		45		1		2		6					3
	7	방재안전	1		1											
	7	방송통신	6		4				1		1					
	7	위생	1						1							
	7	시설관리	1						1							
	7	운전	18		6		2		1		9					
	7	행정·세무	2		2											
	7	행정·전산	9		8		1									
	7	행정·사회복지	6		6											
	7	행정·사서	2		2											
	7	행정·공업	8		7		1									
	7	행정·농업	4		3		1									
	7	행정·녹지	1								1					
	7	행정·보건	2		1				1							
	7	행정·환경	4		3				1							
	7	행정·시설	7		6						1					
	7	행정·방재안전	3		3											
	7	행정·방송통신	1		1											
	7	행정·농촌지도	1						1							
	7	행정·교육행정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7	행정·수의	1										1			
	7	전산·수의	1										1			
	7	식품위생·수의	2										2			
	7	전산·방송통신	3			3										
	7	전산·농업연구	1							1						
	7	공업·녹지	2							1			1			
	7	공업·시설	2			2										
	7	농업·시설	1										1			
	7	농업·수의	8			7							1			
	7	행정·학예연구	1										1			
	7	농업·농업연구	1										1			
	7	농업·농촌지도	2			1				1						
	7	녹지·녹지연구	1										1			
	7	수의·수의연구	8										8			
	7	해양수산·환경	2			2										
	7	해양수산·방송통신	1			1										
	7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7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7	보건·식품위생	8			7				1						
	7	보건·약무	1			1										
	7	보건·간호	8			6				1			1			
	7	시설·방송통신	1													1
	7	시설·방재안전	2			2										
	7	시설·사회복지	1			1										
	7	방재안전·방송통신	1			1										
	7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7	행정·보건·간호	1			1										
	7	행정·농업·시설	1			1										
	7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7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7	행정·공업·시설	1			1										
	7	행정·시설·공업·녹지	2										2			
	7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7	농업·시설·공업	1										1			
	7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7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7	전화상담운영														
	7	전기운영														
	7	기계운영														
	7	열관리운영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7	사육운영	1										1			
	7	사무운영	3			1							2			
	8급	소계	132			57			9		20		44			2
	8	행정	41			27			6		3		3			2
	8	전산	1										1			
	8	사회복지	2			2										
	8	사서	1								1					
	8	숙기	2					2								
	8	공업	19			2		1		8			8			
	8	농업	6			3							3			
	8	녹지	6			1							5			
	8	해양수산	6			1							5			
	8	보건														
	8	환경	1							1						
	8	시설	12			6							6			
	8	운전	10			1				6			3			
	8	행정·전산	3			3										
	8	행정·사회복지	2			2										
	8	행정·농업	1			1										
	8	행정·시설	1										1			
	8	행정·보건	1			1										
	8	전산·방송통신	1			1										
	8	공업·환경	1			1										
	8	공업·운전	2										2			
	8	시설·방재안전	1			1										
	8	시설·공업	1										1			
	8	보건·식품위생	1			1										
	8	보건·간호	1			1										
	8	위생·조리	1			1										
	8	전기운영														
	8	전화상담운영														
	8	기계운영	5			1							4			
	8	농림운영	2										2			
	8	사무운영	1							1						
	9급	소계	46			23			3		7		12			1
	9	행정	4			3			1							
	9	공업	1							1						
	9	농업	1										1			
	9	시설	1			1										
	9	해양수산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9	방송통신	1		1											
	9	방송통신·방재안전	1		1											
	9	운전	3										3			
	9	행정·시설	2										2			
	9	행정·농업	1										1			
	9	위생·조리														
	9	통신운영	1				1									
	9	기계운영														
	9	사육운영	1										1			
	9	사무운영	28		17		1		6				3		1	
전문경력관 소계			7		4								3			
가군 소계			1		1											
가		비상계획관	1		1											
가		경제분석전문위원														
나군 소계			6		3								3			
나		홍보연구원														
나		화생방관리원	1		1											
나		발간실장	1		1											
나		보존문서관리원	1		1											
나		농기계교육교관	2										2			
나		농업인교육전문위원	1										1			
연구직 계			199		5				160				34			
연구관 소계			38		2				32				4			
관		학예연구	4		2								2			
관		농업연구	16						16							
관		녹지연구	1										1			
관		수의연구	1										1			
관		보건연구	3						3							
관		환경연구	3						3							
관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사 소계			161		3				128				30			
사		학예연구	6		2								4			
사		기록연구	1		1											
사		농업연구	62						59				3			
사		녹지연구	8										8			
사		수의연구	8										8			
사		해양수산연구	7										7			
사		보건연구	27						27							
사		환경연구	34						34							
사		보건연구·환경연구	8						8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사	업	소	합	의	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지 도 직 계			26							26						
		지도관 소계	7							7						
		관 농촌지도	7							7						
		지도사 소계	19							19						
		사 농촌지도	19							19						
소 방 직 계			3,456		231					3,225						
		소방직 소계	3,456		231					3,225						
		소방정	22		6					16						
		소방령	94		25					69						
		소방령·방송통신	1		1											
		소방경·공업6	1		1											
		소방경	226		38					188						
		소방위	338		47					291						
		소방장	474		55					419						
		소방교	760		40					720						
		소방사	1,540		18					1,522						
경 찰 직 계			4		4											
		경찰직 소계	4		4											
		경 감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과) ① (생략)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u>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u> 으로, 예산과장·인구청년정책과장·법무행정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행정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u>지방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u> 으로----- ----- <u>지방과학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생략)	제7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안전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사회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특별사범경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u>지방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지방과학기술서기관</u>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산업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유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u>지방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지방과학기술서기관</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유산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⑥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세계유산</u> 등재 마스터플랜 및 등재전략 수립	6. <u>유네스코 유산</u> ----- --
7. 유네스코 <u>세계유산</u> 등재 추진	7. ----- <u>유산</u> -----

8. (생 략)

9.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심포지엄 및 간행물 발간

10. 인류 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11. ~ 65. (생 략)

66.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최 추진

67. ~ 73. (생 략)

74. 민족종교 관련 업무

75. 종교활동 실태조사

<신 설>

76. ~ 100. (생 략)

101.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시설분야)

102. 전라유학진흥원 진흥사업(학술)

<신 설>

103. ~ 108. (생 략)

109.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건립

110.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설립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1. ~ 119.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유네스코 유산 -----

<삭 제>

10. ~ 64. (현행 제11호부터 제65호까지와 같음)

<삭 제>

65. ~ 71. (현행 제67호부터 제73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97. 한국학미래진흥원 건립 및 운영

72. ~ 96. (현행 제76호부터 제100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104.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98. ~ 103. (현행 제103호부터 제108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114.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성화 계획수립

115. 장수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116. 조선왕조실록 선양 사업

117. 역사문화권 중요유적발굴조사

105. ~ 113. (현행 제111호부터 제119호까지와 같음)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방부이사관
으로 보하고, 유치총괄과장·국제과장은 각
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가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유치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국제스포츠기구 행사 참여 및 유치 홍보

<신설>

17. ~ 19. (생략)

20.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외 행사 홍보관 운영

21. ~ 26. (생략)

④ 국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15.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
하고, 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보
건의료과장·고령친화정책과장·건강증진과
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9.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홍보

16. ~ 18. (현행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
음)

<삭제>

20. ~ 25. (현행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
음)

④ -----.

1. ~ 15. (현행과 같음)

16. 하계올림픽 유치 국제 홍보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생 략)

6.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사·평가 분석

7. ~ 16. (생 략)

17. 여성일자리센터[(재)여성교육문화센터] 지도 감독

18. ~ 32. (생 략)

33.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지도 관리

34. (생 략)

35. 여성단체 육성관리 및 여성단체사업 공모 지원

<신 설>

<신 설>

36. 여성단체 권익증진 사업 지원

37. ~ 42. (생 략)

<신 설>

43. 보호아동 자립 지원

44. ~ 56. (생 략)

5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신 설>

58. 입양활성화 사업지도

59. ~ 67. (생 략)

<신 설>

68. 아동복지 관련 행사 지원

1. ~ 5. (현행과 같음)

6.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7. ~ 16. (현행과 같음)

17.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및 -----

18. ~ 32. (현행과 같음)

3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35. (현행 제34호와 같음)

36. ----- 역량강화 사업 지원 ---

37.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삭 제>

39. ~ 44. (현행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와 같음)

45.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삭 제>

46. ~ 58. (현행 제44호부터 제56호까지와 같음)

59. 가정위탁아동 -----

60. 공적입양체계 구축 및 입양아동·가족 지원

<삭 제>

61. ~ 69. (현행 제59호부터 제67호까지와 같음)

70.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지원

71. 아동복지협회 등 아동복지 관련 단체 및 -
--

69. 아동복지협회 등 아동 관련 단체 지원사업

70. ~ 77. (생략)

78.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

79. · 80. (생략)

8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지원

82. (생략)

83.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리

<신설>

84. · 85. (생략)

86. 예식장업 방역 지원

87. ~ 89. (생략)

<신설>

9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91. ~ 93. (생략)

94.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95. ~ 97. (생략)

98.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운영

99. ~ 101. (생략)

102. (생략)

<신설>

103. (생략)

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삭제>

72. ~ 79. (현행 제70호부터 제77호까지와 같음)

80. ----- 지원

81. · 82. (현행 제79호 및 제80호와 같음)

<삭제>

83. (현행 제82호와 같음)

84. 공동육아나눔터 -----

85.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

86. · 87. (현행 제84호 및 제85호와 같음)

<삭제>

88. ~ 90. (현행 제87호부터 제89호까지와 같음)

91.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삭제>

92. ~ 94. (현행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와 같음)

9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96. ~ 98. (현행 제95호부터 제97호까지와 같음)

<삭제>

99. ~ 101. (현행과 같음)

34. (현행 제102호와 같음)

103.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102. (현행 제103호와 같음)

⑤ -----.

1. ~ 103. (생 략)

<신 설>

⑥ ~ ⑧ (생 략)

⑨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손상퇴원환자 감시 관리

13. ~ 69. (생 략)

70.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

71. ~ 96. (생 략)

제11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물통합관리과장·산림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설정책과장·도로공항철도과장·교통정책과장·주택건축과장·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업유치과장·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민생경제과장·기업애로해소과장·창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1. ~ 103. (현행과 같음)

10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68. (현행 제13호부터 제69호까지와 같음)

<삭 제>

69. ~ 94. (현행 제71호부터 제96호까지와 같음)

제11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전환산업과장·청정에너지수소과장·바이오방위산업과장·디지털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생명정책과장·농촌사회활력과장·스마트농산과장·농식품산업과장·축산과장·동물방역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105.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물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새만금해양수산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새만금지원수질과장·수산정책과장·해양항만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23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등) ① (생 략)

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105. (현행과 같음)

106.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

⑦·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물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지원과장·자원경영과장·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종자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41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5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1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4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②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원장)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43조(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제45조(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
-----.

제47조(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제51조(소장)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64조(사무국) ① -----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 최홍창(063-280-42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786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무정~산내 (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지방도 확포장 L=1.88km B=23.0m		
도로공사 구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8-5번지 ~ 백산리 962번지(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8-5번지 ~ 백산리 962번지(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18. 4. 27.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당초 : 2025. 12.31. 변경 : 2026. 12.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전통사업 발전과 관광객유치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변경사유) 사유지 확보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토지수용 재결의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0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419호	수퍼비 주식회사 대표 김정빈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서암로 201	2025.11.18.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10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2025~2026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통행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737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공고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 7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구 간	(지737)고기삼거리~달궁삼거리 (국지60)육모정~고기삼거리
기 간	2025년 11월 27일 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 유	2025~2026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통행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737호선 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는 상시 통제하며,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육모정~내기마을~고기삼거리는 기상상황(폭설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통제함		

※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 배현진(290-674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3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등록 번호	분할합병된 법인(양도법인)		분할합병후 존속법인(양수법인)		수리 일자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620180	주식회사 경원전력 대표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1번길 10-15(금호동)	주식회사 나래정보통신 대표 김경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덕성길 15-2, 1층	'25. 11. 2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3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및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28일

■ 공 고 사 항

① 2026년 발행계획

- 발행액 : 105,916백만원
- 발행기간 : 2026. 1. 2. ~ 2026. 12. 31.
- 발행방법 : 전자등록발행
- 발행조건 :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연 2.0% 복리
- 매출대상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② 2026년 상환계획

- 상환대상 : (원금) 2011 ~ 2021년도 발행분 / (이자) 2016 ~ 2021년도 발행분
- 상환기간 : 2026. 1. 2. ~ 12. 31.
- 상환금 지급처 : NH농협은행, 전북은행
 - 2012년도 발행분까지 : 농협은행 전 영업점에서 상환
 - 2013년도 발행분부터 : 채권을 발행한 각 은행 영업점에서 각각 상환
 - (13년 발행분부터) NH농협 발행 시 ⇒ NH농협 전 영업점 / 전북은행 발행 시 ⇒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지급은행 총괄점 :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전북은행 지역상생부

※ 청구기간 :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 이내

※ 2011년 발행 채권 원금, 2016년 발행 채권 이자에 대하여는 2026년 청구일까지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시효가 소멸 됩니다.

(예시) 2011. 1.15.일 발행 ⇒ 2026. 1.31일 원금상환 채권소멸(발행 월 기준)

2016. 1.15.일 발행 ⇒ 2026. 1.31일 이자상환 채권소멸(발행 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41호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부안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 위치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24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54,437.3㎡
- 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7.12월
- 사업내용 :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청정수소 실증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완충녹지 감)8,094.0㎡ 산업시설용지 증)7,938.0㎡ 공공시설용지 증)156㎡

2.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5년 11월 28일 ~ 2025년 12월 11일(공람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부안군 지역경제과

4. 기 타 : 본 열람 내용은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4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건 명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제 출 일	2025. .
의 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 공고한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5. 11. 21.(금) 08:2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5 -11	겨울철 대비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	○ 겨울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게재할 것 (주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2025 -12	신규 임용자 교육체계 개선	○ 신규 임용자 교육 이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확인됨에 따라, 신규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자 및 3~5년 차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에 반영할 것 (주관: 인재개발원)
2025 -13	간부 보고 대기시간 효율화	○ 간부 보고를 위한 직원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행정포탈에 보고 대기시간 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주관: 행정정보과)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 대응 - '26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할 것 (주관: 전 실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 연말·연시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누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설 것 - 도 종합 청렴도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전 부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 (주관: 감사위원회/협조: 전 실국)
		○ 도의회 대응 철저 -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필수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 (주관: 전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올림픽 유치 추진 협조 강화 - 올림픽 유치 절차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은 올림픽유치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것 (주관: 2036하계올림픽유치단/협조: 전 실국)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정상화 추진 -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수시로 소통하여 전략적으로 공조 대응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유지할 것 (주관: 도로공 항철도과)
		○ 도정 학습 문화 조성 - 도정 핵심 시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 전반에 학습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실·국·과장은 백년포럼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 (주관: 전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생성형 AI 역량강화 교육 참여 - 실·국·과장은 「국·과장급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수강을 독려하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주관: 인재개발원/협조: 전 실국)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2019.06.28.)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정 읍 시 장

I. 재생계획

1. 재생사업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태곡리 일원
- 면 적: 1,025,038.6㎡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주력산업 고도화, 업종집적화 및 재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 업종재배치계획을 통한 동종 및 유사업종간 집적화로 기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 노후화 된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가로주차장 조성으로 보행자 안전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
 - 주차용지 확충을 통해 단지내 주차문제 해소
 - 기존 공원부지의 친환경공원 정비로 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단지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 효율화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단지내 현황 반영 및 효율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 사업실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주변 산단과 연계한 혁신역량 강화
 - 기존 산업의 첨단화 유도 및 R&D기능 도입으로 주변산단과 연계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시 행 자 : 정읍시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 : 2019년~2025년
-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 재정비방식: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5.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6. 업종재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구 분	유치업종	필지 수 (개)	면적(㎡)			구성 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	746,077.8	감)3,584.6	742,493.2	100.0	
C10, C11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9	40,872.0	증)33,416.5	74,288.5	10.0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55,703.0	증)63,430.1	119,133.1	16.0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	64,430.5	증)107,184.0	171,614.5	23.1	
C22	고무 및 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2	189,842.3	증)43,631.4	233,473.7	31.4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1	378,717.3	감)369,157.9	9,559.4	1.3	
C28	전기장비 제조업	6	16,511.5	증)117,912.5	134,424.0	18.1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본 변경사항은 실질적인 면적변경은 없으며, 산업단지 현황반영을 위한 변경사항임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업종배치계획 현황은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 고시 제2021-392호, 21.12.24) 참고

나. 업종재배치계획

업종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42,493.2	100.0	
고부가가치 식품특화지구	144,188.8	15.4	
친환경자동차산업 특화지구	321,539.0	43.3	
R&D 첨단소재 특화지구	306,767.4	41.3	

※ 유치업종 재배치계획은 향후 신규업종 배치 시 금회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집적화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25,038.6	-	1,025,038.6	100.0	
산업시설용지		746,077.8	감)3,584.6	742,493.2	72.4	
지원시설용지		19,466.1	감)14,983.1	4,483.1	0.4	
공공시설 용지	소계	170,205.0	증)1,973.3	176,661.3	17.2	
	도로	141,924.0	증)1,973.3	143,897.3	14.0	
	주차장	-	증)4,483.0	4,483.0	0.4	
	폐기물처리장	18,322.0	-	18,322.0	1.8	
	변전소	9,959.0	-	9,959.0	1.0	
녹지시설 용지	소계	89,289.7	증)12,111.3	101,401.0	9.9	
	공원	12,654.0	-	12,654.0	1.2	
	녹지	76,635.7	증)12,111.3	88,747.0	8.7	

※ 본 변경사항은 실질적인 면적변경은 없으며, 산업단지 현황반영을 위한 변경사항임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토지이용계획(산업,지원,공공,녹지시설용지)기정 면적 기준: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1-392호, 21.12.24)

※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공원, 녹지 면적 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나.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25,038.6	100.0	
도시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25,038.6	100.0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6	9,121	141,924.0	1	191	1,782.1	6	3,653	52,713.4	9	5,538	87,428.5
대 로	2	2,161	46,135.6	-	-	-	-	-	-	2	2,161	46,135.6
중 로	10	6,960	93,471.1	-	-	-	6	3,653	52,713.4	4	3,307	40,757.8
소 로	4	261	2,317.2	1	191	1,782.1	-	-	-	3	70	535.1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1,375	태곡리 946	태곡리 946	일반도로	03.12.12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786	태곡리 946	태곡리 946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570	태곡리 930	태곡리 930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539	태곡리 947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도로	813	태곡리 945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도로	812	태곡리 945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535	태곡리 939-4	태곡리 939-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7	15	보조간선도로	384	태곡리 939-4	태곡리 939-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036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094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3	14	국지도로	828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349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91	태곡리 947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0	중 3-1	태곡리 596	일반도로	16.08.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0	중 3-2	태곡리 60	일반도로	16.08.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30	중 3-3	태곡리 23-1	일반도로	16.08.26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2)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북면 태곡리 935-3일원	-	증)4,483.1	4,483.1	금회	

※ 금회 재생계획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북면 태곡리 936일원	12,654.0	-	12,654.0	03.12.12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4)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북면 태곡리 942일원	76,635.7	증)12,111.3	88,147.0	03.12.12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녹지변경 사항은 대상지 현황반영 및 오차정정에 따른 변경임

※ 기정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5)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전기 공급설비	변전시설	태곡리 928-1	9,959.0	-	9,959.0	16.08.26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태곡리 569-3 일원	18,322	-	18,322	03.12.12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라.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수요량(m ³ /일)	용수공급계획	비고
합 계	7,944	산업단지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	
공 업 용 수	7,513		
생 활 용 수	319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2)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량(m ³ /일)	오·폐수처리계획	비고
합 계	7,250	오·폐수는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오 수 량	6,685		
폐 수 량	565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3)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량(ton/일)	폐기물처리계획	비고
합 계	332.40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토록 계획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3.91		
사업장폐기물	328.49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4)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kw)	폐기물처리계획	비고
합 계	62,869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산업시설용지	62,296		
지원시설용지	573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5) 열공급계획

구 분	열수요량(Gcal/년)	폐기물처리계획	비고
합 계	1,427,126	입주업체별 및 건물별 개별시설 설치하여 에너지 공급	
산업시설용지	1,427,081		
지원시설용지	45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9.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승인도(1:5,000) : 실음생략

II. 재생시행계획

1. 재생사업의 명칭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 재생사업 시행자

- 성 명: 정읍시장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주력산업 고도화, 업종집적화 및 재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 업종재배치계획을 통한 동종 및 유사업종간 집적화로 기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 노후화 된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가로주차장 조성으로 보행자 안전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
 - 주차용지 확충을 통해 단지내 주차문제 해소
 - 기존 공원부지의 친환경공원 정비로 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단지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 효율화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단지내 현황 반영 및 효율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 사업실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주변 산단과 연계한 혁신역량 강화
 - 기존 산업의 첨단화 유도 및 R&D기능 도입으로 주변산단과 연계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태곡리(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일원
- 면 적 : 1,025,038m²

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사업기간 : 2019년~2025년
-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일원	1,025,038.6	금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면적: 1,025,038.6㎡ (중 1,025,038.6㎡)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재생사업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25,038.6	100.0	
도시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25,038.6	100.0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9,121	141,924.0	1	191	1,782.1	6	3,653	52,713.4	9	5,538	87,428.5
대로	2	2,161	46,135.6	-	-	-	-	-	-	2	2,161	46,135.6
중로	10	6,960	93,471.1	-	-	-	6	3,653	52,713.4	4	3,307	40,757.8
소로	4	261	2,317.2	1	191	1,782.1	-	-	-	3	70	535.1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1,375	태곡리 946	태곡리 946	일반도로	03.12.12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786	태곡리 946	태곡리 946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570	태곡리 930	태곡리 930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539	태곡리 947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도로	813	태곡리 945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도로	812	태곡리 945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535	태곡리 939-4	태곡리 939-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2	7	15	보조간선도로	384	태곡리 939-4	태곡리 939-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036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094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3	14	국지도로	828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349	태곡리 944	태곡리 944	일반도로	03.12.12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91	태곡리 947	태곡리 947	일반도로	03.12.1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0	중 3-1	태곡리 596	일반도로	16.08.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0	중 3-2	태곡리 60	일반도로	16.08.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30	중 3-3	태곡리 23-1	일반도로	16.08.26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북면 태곡리 935-3일원	-	증)4,483.1	4,483.1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 : 4,483.1㎡, 증)4,483.1㎡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북면 태곡리 936일원	12,654.0	-	12,654.0	03.12.12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북면 태곡리 942일원	76,635.7	증)12,111.3	88,147.0	03.12.1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면적 : 76,635.7㎡ → 88,147.0㎡ 증) 12,111.3	○ 녹지면적 현행화 및 오차정정

3)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태곡리 928-1	9,959.0	-	9,959.0	16.08.26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태곡리 569-3 일원	18,322	-	18,322	03.12.12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기정 면적자료가 없으므로 금회 현황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면적기준: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16.08.26)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		
-	산업1	34,870.2	①	18,521.8	
			②	8,577.2	
			③	7,771.2	
-	산업2	32,923.2	①	8,384.0	
			②	4,867.4	
			③	3,300.0	
			④	6,451.8	
			⑤	9,920.0	
-	산업3	29,881.9	①	7,310.7	
			②	6,729.3	
			③	7,900.3	
			④	3,305.8	
			⑤	4,635.8	
-	산업4	16,511.5	①	6,612.0	
			②	6,599.9	
			③	3,299.6	
-	산업5	32,100.6	①	7,985.5	
			②	3,306.0	
			③	4,779.2	
			④	8,012.1	
			⑤	8,017.8	
-	산업6	32,817.0	①	7,587.7	
			②	8,250.0	
			③	5,407.5	
			④	11,571.8	
-	산업7	32,641.9	①	8,124.5	
			②	8,158.7	
			③	8,169.0	
			④	8,189.7	
-	산업8	31,788.6	①	4,694.0	
			②	3,286.7	
			③	4,576.7	
			④	3,335.5	
			⑤	6,551.9	
			⑥	4,702.8	
			⑦	4,641.0	
-	산업9	33,008.0	①	8,207.3	
			②	8,303.8	
			③	8,227.3	
			④	8,26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산업10	33,771.1	①	33,771.1	
-	산업11	10,500.0	①	10,500.0	
-	산업12	32,883.8	①	4,780.2	
			②	3,764.2	
			③	7,888.3	
			④	4,910.2	
			⑤	3,635.7	
			⑥	7,905.2	
-	산업13	189,842.3	①	58,954.7	
			②	123,159.8	
			③	7,727.8	
-	산업14	46,522.1	①	21,160.0	
			②	25,362.1	
-	산업15	45,624.5	①	20,022.5	
			②	25,602.0	
-	산업16	54,559.1	①	6,611.6	
			②	8,264.5	
			③	8,347.2	
			④	4,889.8	
			⑤	15,274.9	
			⑥	11,171.1	
-	산업17	50,594.4	①	50,594.4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지원1	4,483.1	①	4,483.0	지원시설 (복합문화센터)

3)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공공1	18,322.0	①	18,322.0	폐기물처리장
	공공2	9,958.8	①	9,958.8	전기공급설비
	공공3	12,165.4	①	12,165.4	공원
	공공4	4,483.1	①	4,483.1	주차장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산업1-①~③ ~ 산업17-①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지원1-①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3)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공공1-① ~ 공공4-①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7.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12,654.0	12,654.0	100.0	
기반시설	-	증)1,927.3	1,927.3	15.2	
조경시설	-	증)193.6	193.6	1.5	
휴양시설	-	증)204.8	204.8	1.6	
운동시설	-	증)1,064.0	1,064.0	8.4	
편익시설	-	증)731.2	731.2	5.8	
녹지 및 기타	-	증)8,533.1	8,533.1	67.5	

2)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기능	구분	시설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고	
총 면 적				12,654.0	-	-	-	-
시설면적				4,120.9	-	-	-	-
기 반 시 설	변경	소 계		1,927.3	-	-	-	-
	변경	도로(소로3류)		1,399.2	-	-	-	연장 673.7m
	변경	광장		528.1	-	-	-	-
	변경	1-1	광장1	128.6	-	-	-	-
	변경	1-2	광장2	167.3	-	-	-	-
	변경	1-3	광장3	118.9	-	-	-	-
	변경	1-4	광장4	69.8	-	-	-	-
	변경	1-5	광장5	43.5	-	-	-	-
조 경 시 설	변경	소 계		193.6	-	-	-	-
	변경	①	원형플랜터	9.6	-	-	-	1개소
	변경	②	야외무대	129.4	-	-	-	1식
	변경	③	개비온	18.6	-	-	-	37m
	변경	④	디딤석	36.0	-	-	-	120개소
휴 양 시 설	변경	소 계		204.8	-	-	-	-
	변경	2-1	휴게쉼터1	90.0	-	-	-	-

3) 도로 시설 계획 세부시설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도로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합 계				673.7	1,399.2	-	-	-	
변경	소 계				673.7	1,399.2	-	-	-	
변경	소로	3	1	2	51.0	107.4	연결로	1-1	4-1	
변경	소로	3	2	1.5	18.0	27.0	연결로	소로3-1	녹지	
변경	소로	3	3	1.5	6.1	9.2	연결로	4-1	소로3-5	
변경	소로	3	4	3	85.3	283.8	진입로	남측구역계	1-2	
변경	소로	3	5	2	130.0	272.1	진입로	북측구역계	소로3-4	
변경	소로	3	6	1.5	170.6	256.0	연결로	소로3-5	1-3	
변경	소로	3	7	2	99.8	216.1	연결로	소로3-4	1-5	
변경	소로	3	8	2	21.8	45.4	연결로	1-4	소로3-5	
변경	소로	3	9	2	41.6	83.2	연결로	소로3-5	소로3-7	
변경	소로	3	10	2	49.5	99.0	연결로	1-5	1-4	

7. 관련도면 : “실음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읍시 일
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에 비치함.

정읍시 고시 제2025-15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5년 11월 28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농소 구역계	상평 구역계	대로1-2,3 대로3-3,4	3,885	144,473.2	'96.11.21	호남선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농소 구역계	상평 구역계	대로1-2,3 대로3-3,4	3,793	142,500.9	'96.11.21	호남선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호남선)	• 위치 : 정읍시 상평동 911-15번지 • 면적 : 144,473.2㎡ → 142,500.9㎡ 감) 1,972.3㎡ • 연장 : 3,885m → 3,793m, 감)92m	• 호남선 폐선구간 내 국가철도공단단의 일부 구간(상평동 911-15) 해제 요청에 따른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김제시 공고 제 2025-1156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주민 공람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28.

김 제 시 장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존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공람내용

가. 대상소하천 : 총 24개 하천

- 황산면(의곡천, 매산천, 상목천)
- 금산면(청도천, 율치천, 아직천, 소용천, 어유천, 봉의천, 반곡천, 기룡천, 유산천, 율리천, 구성천, 백운천)
- 금구면(용복천, 영천천, 어전천, 당월천, 봉산천, 양석천, 오산천, 지장천, 대야천)

나. 총연장 : 43.29km

다. 목적 및 정비효과

- 재해예방 : 농경지보호 405.92 ha, 주거지 보호 : 5.92ha
- 생활환경개선 : 수질개선 및 주민의 휴게공간조성

3. 공람서류

-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보고서
- 나. 소하천구역, 예정지 지형도면 및 조서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재난과, 황산면, 금산면,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김제시인터넷 홈페이지

6.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나. 제출장소 : 김제시 안전재난과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안전재난과 ☎ 063-540-396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5-2156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인 이서휴게소 하행선(순천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5년 11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6번지 외 3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이서휴게소 하행선(순천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교통광장 : A=426,594㎡
 - (대지면적 : 천안방향 휴게소: 27,508㎡, 순천방향 휴게소: 30,453㎡)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91.72	34.20	3,025.92	3,718.55	34.20	3,752.75	
주1~3,부1~9	2,991.72	-	2,991.72	3,718.55	-	3,718.55	
주4	-	34.20	34.20	-	34.20	34.20	급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3. 11. 24. ~ 2025. 11. 28.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5-2157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인 이서휴게소 상행선(천안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5년 11월 2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3-5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이서휴게소 상행선(천안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교통광장 : A=426,594㎡
 - (대지면적 : 천안방향 휴게소: 27,508㎡, 순천방향 휴게소: 30,453㎡)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19.86	46.80	2,666.66	3,311.58	46.80	3,358.38	
주1~4,부1~9	2,619.86	-	2,619.86	3,311.58	-	3,311.58	
주5	-	46.80	46.80	-	46.80	46.80	급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3. 11. 24. ~ 2025. 11. 28.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A300-25-0143-252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 나. 개요 : 한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05-31번지 일원
 - 나. 면적 : 0.222m²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 11. 18. ~ 2030. 11. 17.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A300-25-0142-252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 나. 개요 : 한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7번지 일원
 - 나. 면적 : 1.115m²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 11. 18. ~ 2030. 11. 17.